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163 발의연월일: 2022. 11. 8.

발 의 자:김성환 의원

찬 성 자: 강득구·강민정·강병원

강선우・강준현・강훈식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김경만 · 김경협 · 김교흥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김병욱 · 김병주 · 김상희

김성주 · 김수흥 · 김승남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김영진 · 김영호 · 김용민

김원이 · 김윤덕 · 김의겸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김철민 · 김태년 · 김한규

김한정 · 김회재 · 남인순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박병석 • 박상혁 • 박성준

박영순 • 박용진 • 박재호

박 정・박주민・박찬대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서영석・설 훈・소병철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어기구 • 오기형 • 오영환 우상호 • 우원식 • 위성곤 유기홍 • 유동수 • 유정주 유건영 • 유관석 • 유영덕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이탄희 · 이학영 · 이해식 이형석 • 인재근 • 임오경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정일영 · 정청래 · 정춘숙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조오섭·조용천·조정식 주철현·진선미·진성준 천준호·최강욱·최기상 최인호·최종윤·최혜영 한병도·한정애·한준호 허 영·허종식·홍기원 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운하·황 희 의원(168인)

제안이유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음.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위·수탁기업이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위수탁거래 구조상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음.

이에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위·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 나.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 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2조의3 신설).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에게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포상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5 항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상생협력"으로, "(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을 "(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의 조정 지급 등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1조의 제목 "(약정서의 발급)"을 "(약정서의 발급 및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 방법"을 "검사 방법,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주요 원재료
- 2.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및 기준가격
- 3. 납품대금 조정요건(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한다)
- 4. 납품대금 조정주기, 조정일 및 조정대금 반영시기
- 5. 납품대금 연동산식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연동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1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 제7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 ① -----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상생협력 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 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 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 ----(이하 "상생협력 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로----수 있다. <신 설> 1. 제22조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 른 납품대금의 조정 지급 등 을 성실히 이행한 위탁기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 |제21조(약정서의 발급 및 표준계 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약서 작성) ① -----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 ----- 검사 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법,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 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조정방법 -----

-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 항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표 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주요 원재료
- 2.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및 기 준가격
- 3. 납품대금 조정요건(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0분의 10 이 내로 정한다)
- 4. 납품대금 조정주기, 조정일 및 조정대금 반영시기
- 5. 납품대금 연동산식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 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표 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⑤ 제2항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연동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 업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원 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 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 의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표 준계약서 작성, 납품단가 연동 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에 관하여 수탁 • 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 단가연동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 단가연동지원기구의 설치 · 운 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④ (생 제43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⑤ 제21조제2항에 따른 표준계
	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7항에 따라 납품대금
	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⑤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